

『특수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게재 논문 원고 추가 모집

우리 원에서는 2018년도 『특수교육연구』 제25권 제2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 주제 : 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

2. 원고 분량

-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A4 15쪽 내외(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쪽을 초과할 수 없음

3. 논문 게재 신청서 및 논문 원고 마감

- 2018. 10. 12.(금)까지

※ 온라인 자동 접수 마감

4. 논문 게재 신청 및 논문 작성 양식

- (논문 게재 신청 시)

-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 ※ 연구윤리서약은 논문 제출 시 논문투고자 및 공동저자 포함 서명

- ※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첨부파일로 제출

- 논문원고 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논문 제출

- (논문 게재 확정 후)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이내)확인서 별도 제출

- ※ 게재 확정자 별도 공지

5. 온라인 접수처 : <http://nise.jams.or.kr>

6. 문의처

- TEL : (041) 537-1443

- FAX : (041) 537-1450

※ 「특수교육연구」논문집은 2017년 재인증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연구』 논문 작성 형식(APA 형식)

1. 원고작성

- (1) 한글 2007 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논문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쓴다.
- (3) 원고 분량은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원고 15쪽 내외(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4)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6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2쪽 이내의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 (5) 보고서 편집 체제

① 논문 체제

제 목
정 명(소속)
요약문(A4 1/4쪽 이내 : 국문논문은 국문으로, 영문논문은 영문으로)
주 제 어
본 문 : 신명조 10.6 포인트, 정평 95
참고문헌 : (APA 형식)
영문초록(국문초록): 영문(국문) 주제어 반드시 포함

- ② 문단모양 : 줄간격 170mm
- ③ 글자모양 : 신명조 10.6 포인트, 정평 95
- ④ 용지여백
 - 위 / 아래 : 43 / 18
 - 왼쪽 / 오른쪽 : 37 / 37
 - 머리말 / 꼬리말 : 15 / 12

2. 제목의 번호 붙임과 제자의 크기

- (1) 논문 제목 : 18p, 신명조, 가운데 정렬
- (2) 성명 : 1줄 띄우고, 11p, 중고딕, 오른쪽 정렬
- (3) 소속 : 성명 뒤, 중고딕, 11p
- (4) 요약 : 9.5p, 신명조, 1/4쪽 이내
- (5) 주제어 : 요약 줄 바로 밑, 9p, 신명조, 왼쪽 정렬
- (6) 1단계 I, II, III : 16p, 중고딕, 가운데 정렬
- (7) 2단계 1, 2, 3 : 1줄 띄우고 1칸에서 시작, 12p, 신명조
- (8) 3단계 1), 2), 3) : 2칸 띄우고, 10.6p, 신명조
- (9) 4단계 (1), (2), (3) : 2칸 띄우고, 10.6p, 신명조
- (10) 5단계 ①, ②, ③ : 2칸 띄우고, 10.6p, 신명조
- (11) 본문 : 10.6p, 신명조
- (12) 참고문헌 : 제목은 16p, 신명조
내용은 10.6, 신명조, 정평 95

3. 인용

-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을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 (2)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4. 각주와 후주

- (1) 각주(footnote)의 사용을 금하고, 그 대신 후주(endnote)를 사용한다.
- (2) 후주는 본문에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5. 본문 내의 인용문헌

- (1) 예 1일 경우에는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첫 저자만 표기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인 경우 '000 et al.'로 나타낸다.
- (2) 예 2 : 한 연구(김철수, 1993)...
- (3)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첫 저자만 표기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인 경우 '000 et al.'로 나타낸다.

6. 참고문헌 작성

(1) 논문의 말미에 한중일, 서양순으로 열거한다. 작성요령은 APA 양식에 따른다.

(2) 작성 예 :

① 단행본 : 책명은 고딕체로 할 것

김철수(2003).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 교육출판사.

② 정기간행물 : 간행물 명은 고딕체로 할 것

박명주, 김영길(1998).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효과. 특수교육연구. 25(3).

③ 학위논문 : 논문명은 고딕체로 할 것

신경희(1993). 아동의 선택적 주의집중과 금지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영문 참고문헌 작성요령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②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
(단행본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쓸 것

7.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예 : <표 1>, <그림 1>

(2)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번호는 하단에 제시한다.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은 중앙에 위치시킨다.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리거나 원본 수준으로 제출한다.

8. 외국어로 된 논문은 반드시 국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영문초록 : 600단어 이내

• 국문초록 : 가로 80열, 세로 32행 2쪽 이내

9. 유의 사항

(1) 타 학회지나 연구지 등에 기 발표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

(2) 「특수교육연구」 논문집은 ISSN에 등록된 학술지로서 연구활동실적으로 인정됨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제2항 관련)

(3) 공동 저자의 경우 논문 신청시 전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논문 신청 시 누락된 연구자는 최종 논문제출시 게재가 불가함. 또한 최종 논문 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술할 것

(4)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장에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함

(5) 논문 게재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없으며 제출한 신청서 및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6) 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 심사 시 별도의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게재확정 시 당해 연도의 편성에산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함

『특수교육연구』 발간규정

제정	1994. 2.26.	교육원규정 제 14호
제1차 개정	1998.10.24.	교육원규정 제 60호
제2차 개정	2002. 4. 3.	교육원규정 제 74호
제3차 개정	2004. 8. 8.	교육원규정 제101호
제4차 개정	2009. 3.12.	교육원규정 제117호
제5차 개정	2009. 6.24.	교육원규정 제125호
제6차 개정	2012. 6.14.	교육원규정 제160호
제7차 개정	2012. 9.11.	교육원규정 제167호
제8차 개정	2013.10. 4.	교육원규정 제189호
제9차 개정	2017. 4.17.	교육원규정 제2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논문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삭제>

제3조(개제 논문)

① 『특수교육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지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은 타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③ 원장은 우리 원 연구 보고서에 대해 학술적 가치나 홍보 효과를 감안하여 게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 원 연구 보고서의 경우 책임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지위는 변경이 불가하다.

④ 동일 권호의 논문집에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를 포함하여 동일인물이 2편 이상의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특수교육연구』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연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 위원은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하되, 장애영역 및 학문 분야별로 고루 선임한다.

⑤ 위원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⑥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 1명을 두되, 원장이 임명한다.

⑦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연구』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논문의 심사 대상 적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3.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참삭에 관한 사항
4. 게재 논문 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교육연구』 편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1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①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장애영역별, 학문 영역별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논문 심사 의뢰)

① 위원장은 논문 게재 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장애영역의 편집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 대상 논문의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 대상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을 주제에 따라 관련 장애영역 및 학문 영역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의뢰한다.

④ 심사위원의 배정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논문 심사 기준 및 판정)

- ① 노론 문신 사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노론 문신으로 삼아한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연구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5. 특수교육 분야의 공헌도
6. 편집의 적절성

② 논문 심사 결과의 판정은 「제계가」 「수정 후 제계」 「수정 후 제심」 「제계 불가」로 한다.

③ 십시어원 3인이 같이

1. '계제'가로 판정된 경우 : 자자에게 '계제'가'로 통보하고 계제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계제'가'로 판정된 경우 : 자자에게 '수정 계제'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자치는 수정 후 수정 대대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계제'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수정 후 계심'으로 판정된 경우 : 자자에게 '수정 후 계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자치는 계심 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대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계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계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계제 불가'로 판정된 경우 : '계제 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율에 1인 1표다

1. 심사위원 2인이 「제1개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수정 후 제1개」 「수정 후 제2개」 「제2개」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 가. 「제1개」 「제2개」 「수정 후 제1개」 : 저자에게 「제1개」로 통보하고, 제2개를 확정한다.
- 나. 「제1개」 「제2개」 「수정 후 제1개」 : 저자에게 「수정 후 제1개」으로 통보하고, 수정채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제1실 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은 「수정 후 제1실」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1실 결과에 따라 제2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계제개」 「계제개」 「계제 불가」 「계제 개」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지지는 제시 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제심을 의뢰하며, 제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제제」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제재가」 「수정 후 제심」 「제제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 후 제재가', '수정 후 제재가', '제재가': 저자에게 '수정 후 제재'로 통과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 논문은 '수정 후 제재'로 판정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제재가'로 판정하며, 수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 위원회에서 다음 회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수경 후 제제」, 「수경 후 제제」수경 후 제심 또는 「제제 불가」: 저자에게
 '수경 후 제심'으로 통보하고, 수경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제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경 대조표와 수경 원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경 후 제심」 판결을
 받은 수경 논문은 '수경 후 제심' 판결 심사위원에게, 「제제 불가」 판결을 받은
 수경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제심 결과에 따라 제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제심」으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제제가」 「수정 후 제제」 「제제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 후 재산' '수정 후 재산' 「제재가, 또는 「수정 후 제재」: 저자에게 '수정 후 재산'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산 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산'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 후 제재'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 확인을 의뢰한다. 재산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수정 후 재산' '수정 후 재산' 「제재 불가」: 저자에게 '제재 불가'로 통보하고, 제재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게제가」 「수정 후 게제」 「게제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게제」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게제가」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 후 게제」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 확인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게제가」 「수정 후 재심」 「게제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게제 불가」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게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게제 편수의 결정은 「게제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도 일차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제 여부를 결정한다.

⑦ 학회지 게제 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의 게제)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⑥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논문의 게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수교육 석학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게재하지 않는다.

제11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게재 신청자는 논문 심사 시 별도의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게제 확정 시 당해 연도의 편집 예산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재심사에 따른 추가 심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발간 횟수) 『특수교육연구』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1호 : 발행일 6월 30일(3월 31일 논문 접수 마감)

2호 : 발행일 12월 31일(9월 30일 논문 접수 마감)

제13조 <삭제>

제14조(게제 여부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논문 심사와 관계된 개인 정보는 원장과 편집위원회 외에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 게재된 논문에 한해서 별제본 10부를 필자에게 증정하나, 그 이상 부수는 필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② 원고 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따른다.

③ 기타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특수교육교육과정연구편집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특수교육연구 』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 12. 11. 교육원규정 제112호
제1차 개정 2008. 8. 14. 교육원규정 제114호
제2차 개정 2009. 6. 24. 교육원규정 제12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특수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 3 조(제정 및 심의)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 규정제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특수교육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 4 조(연구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반복 게재'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복 게재'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 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의 일부와 미발표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우리원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 확장과 주요 사인들을 홍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 5 조(연구 대상자 보호)

1.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의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 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응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경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 심사자는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중복 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8 조(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한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연구과장이 된다.
3. 위원회는 국립특수교육원 내부 및 외부의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문가 등 윤리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 중에는 1인 이상의 외부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간사) 심의 과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연구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 11 조(사무 처리)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 12 조(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경 양식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08학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학술지에 대해서도 필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8.14. 교육원규정 제114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